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12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54,033,460원의 과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0. [redacted]구 B건물, C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호로 인쇄·판촉물 제조·도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07. 12. 5.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현재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주민세(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 등을 체납하고 있다.

연번	세목	부과 일자	독촉고지일	부과당시 금액(본세)	가산금	현재체납액
1	주민세(종합소득)	2007.09.10	2007.11.15	1,228,710	921,260	2,149,970
2	주민세(종합소득)	2008.03.19	2008.05.14	8,325,800	6,243,770	14,569,570
3	주민세(종합소득)	2008.03.19	2008.05.14	18,327,050	13,745,010	32,072,060
4	주민세(종합소득)	2008.05.14	2008.07.14	2,995,600	2,246,260	5,241,860
합계				30,877,160	23,156,300	54,033,460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서 2009. 9. 17. E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을, 2013. 4. 16. F은행 및 E은행 각 계좌의 예금채권을, 2020. 12. 21. G조합 계좌의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였고, 이후 위 각 압류를 해제한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행정소송의 유형이 아니어서 대상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거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살피건대,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여 그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또한 과세처분 등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항고소송으로서 과세처분 등 자체의 취소나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당사자소송으로서 과세처분 등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무효 등 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에도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외삼촌인 H의 부탁으로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므로 실제 사업주인 H에게 이 사건 주민세 등이 과세되었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민세는 최종 부과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먼저 H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주민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서 원고의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사업주가 H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H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데 동의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주민세 등 각 부과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근거한 압류 등 징수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주민세 등 원고의 조세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1] 제30조의5 제1항, 제30조의6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다만 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그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

1) 2010. 3. 31.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위 구 지방세법 규정 내용들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40조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은 그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구 지방세법 규정들이 적용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며, 압류해제가 되면 그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하고 그 납부를 독촉고지한 때부터 5년 내에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해제한바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민세 등 원고의 조세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민세 등 조세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